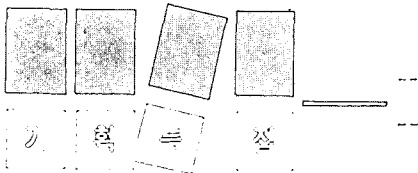


한 해 전 서독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한겨울 일요일 아침 TV토론시간의 토의주제가 너무 신기하였다. 겨울철에 도로상의 눈을 녹이기 위해 염화나트륨을 많이 뿌려서 가로수가 자꾸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모래를 뿌리면 하수구가 막히고 아무것도 안뿌리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등 우리로서는 안뿌린다고 아우성칠 주제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반면에 뉴욕에 가보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대형차가 즐비하고 길거리의 나무는 거대한 빌딩숲에 가려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장식용 전구만 퐁퐁 매달려 있음을 알수있다. 밤을 위한 나무로 전략한 느낌이다. 한편 87년

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타협하기 어려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각자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현재의 이익과 장래의 손실, 인간의 편리성과 자연의 피해등 서로 양립할수 없는 가치들이 환경문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다가옴에 따라 지구환경보존문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제환경협상에 임하다 보면 지구환경을 보존 하자는 명분에는 모두 찬성을 하지만 실제 보존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선·개도국간에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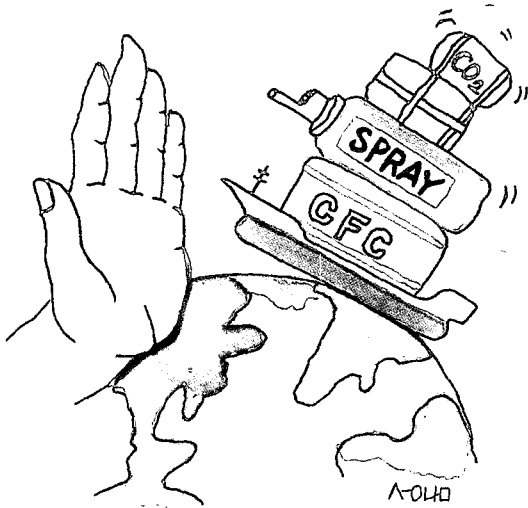
노대래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에 스위스의 산도스라는 화학회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라인강의 뱀장어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환경파괴의 국제적 책임과 보상문제를 놓고 라인강을 끼고있는 나라간에 커다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위 세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서독국민간에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고 환경파괴의 효과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나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이해가 완전히 엇갈린다. 앞의 TV토론에서 환경론자들은 염화나트륨을 뿌리지 말 것을 주장했고 일반시민이나 기업가들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었다. 환경보호문

## 지구환경규제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대응

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구성장이나 무분별한 경제개발 전략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먼 장래의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내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세대간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커다란 문제인데 국가간에 이를 적절히 배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모든 국가가 지구차원의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형성하여야 해결될 수 있는데 아직은 동반자 관계운운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전 모일간지에 UNCED준비협상시 우리가 선진국입장인지 개도국입장인지 불분명하여 회의장에서 대표들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선·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가 입장을 명백히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제협상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기본입장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재조정이 필요한데도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오히려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선·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환경협상의 핵심사항은 규제약속, 자금지원, 기술이전의 3개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규제약속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규제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금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선·개도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리는 규제약속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진국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당장의 급격한 부담이나 부담한 무역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내환경제도가 상당부분 선진화 되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환경보호를 게을리 할 경우 후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지속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재원의 경우도 선진국입장에 서있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자금이용기회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금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이전 분야에서는 선진국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기술자립을 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 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상업적 조건의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선진국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 한편 비상업적, 특허적 기술이전을 주장하는 개도국입장도 지지하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는 기술료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에의 접근기회 봉쇄자체가 문제이므로 적정보상하의 핵심기술에의 접근기회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명 지구헌장이라고 불리는 「리오선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있다. 리오선언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7~8개 조항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당장의 부담은 아니며, 선언의 효력은 10~20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환경관련 제도의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리오선언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책방향을 리오선언이 선도해주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각종 세미나 발표자료들을 보면 '지구환경보존을 국내환경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다.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은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며 지구환경보존에 우리가 적극 나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국내환경보존은 그 효과가 1차적으로 자국내에 미치지만 지구환경보존은 그렇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1인당 GNP가 2만불대인 선진국과 6천불 남짓한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구환경보존과 국내환경보호를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부담능력 이상으로 환경보전을 강요할 경우 경제성장과 국제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환경협상의 본질은 순수한 환경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실리확보를 위한 경제논쟁이며,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란 논리하에 개도국의 선진국화를 차단하는

장치로 활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내환경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공업 수준

국제환경협약이 국내경제에 미칠수 있는 영향은 크게 3분야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특정물질 사용규제와 관리방법의 규제에 의한 국내산업 파급효과, 둘째는 무역규제로 인한 수출입 파급효과, 셋째는 환경오염비용의 원가 반영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영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산업적 영향으로는 CFC 사용규제, CO<sub>2</sub> 규제, 유해폐기물 이동규제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환경규제의 경제적 영향하면 항상 CFC를 연상하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CFC 생산업체는 막대한 타격을 입지만 CFC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측면에서는 CFC의 원가비중이 낮고 대체물질 조달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미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CFC보다도 큰 문제는 CO<sub>2</sub> 배출규제 문제이다.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이 금년 6월 UNCED회의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협상에는 화석연료 과다의존국에 대한 특별고려등 우리 입장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은 없으나 UNCED이후 논의될 의정서에서 각국의 의무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에너지 탄성치가 높고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규제시에는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며 에너지 문제는 전체산업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대책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에너지소비지표 국제비교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 석탄, 석유의존도('90)	63.6	73.4	80.4	69.4	52.5
• '86~90 GNP증가율(A)	2.81	5.23	10.27	2.98	3.29
• '86~90 에너지소비증가율(B)	2.38	3.77	10.97	0.39	1.23
• '86~90 에너지탄성치(B/A)	0.85	0.72	1.07	0.13	0.37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금년 5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구리, 납, 아연 스크랩 및

웨이스트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재생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바젤협약 가입국은 비가입국에 유해물질을 수출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폐기물을 공급하는 사우디, 노르웨이가 이미 협약에 가입하였고 미국, 일본등도 조만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로서도 가입이 불가피하다. 동협정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방법, 거래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약 가입시에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다소 있으나 국내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들이고 협약에 가입하면 재생원자재 확보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대기정화법과 같이 국내입법에 의해 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와 국제적인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기준 미달품 수입시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일반적 규제방식을 들수 있다. 일방적 무역규제는 일반적 규제방식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므로 무역규제는 GATT등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환경을 이유로한 무역규제는 선진국들이 환경기준이라는 기술장벽을 쌓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UR협상은 선진국의 시장도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환경규제는 기술선진국의 시장을 폐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기술이전의 활성화가 국제환경규제의 필수전제조건임을 주장해오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제수단을 활용한 환경 규제의 실현이다. 전통적으로 환경문제는 외부 비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환경 오염의 대가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시장기능에 의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구현할 때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같이 오염방지 투자 비중이 낮고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경우 오염방지투자의 증대와 함께 성장, 물가, 국제수지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에 조화로운 각종 개발정책의 추진과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기존협정의  
가입, 에너지 이용효율화와 폐기물 재활용시책의  
강화, 소비패턴의 변경, 환경규제기준의 상향조정,  
환경규제를 위한 경제수단 도입시 경제적  
영향분석 및 대응책수립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환경의 NOW와 ?

국제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기본입장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국내대책도 병행·추진해 나가야 한다. 환경에 조화로운 각종 개발정책의 추진과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기존협정의 가입, 에너지 이용효율화와 폐기물 재활용 시책의 강화, 소비패턴의 변경, 환경규제기준의 상향조정, 환경규제를 위한 경제수단 도입시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응책 수립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UNCED회의시 채택될 리오선언이나 Agenda 21은 당장의 구속력은 없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단순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현재 추이를 볼 때 2000년대의 세계경제는 지구 환경보존이란 대전제아래 형성될 것이며, 환경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미흡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환경을 위해 기존 산업정책의 변경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에너지 이용효율화, 소비절약, 환경기술개발등 지구환경보존에도 기여하고 국내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책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산업구조, 생활방식과 각종 개발정책을 환경에 조화롭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전원개발사업등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

는 사업은 미리미리 기본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91년도에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에너지 이용기기의 에너지 효율등급표시제, 에너지 영향평가제등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공정개선과 에너지 절약형 제조설비의 보급확대, 정밀기기·유전공학산업등 고부가가치 성장유망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몬트리올의정서는 CFC의 사용금지시기를 당초의 2000년에서 96. 1월로 앞당기자는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었다. 우리도 대체물질개발과 이용기술개발을 앞당겨야 하나 개발기간 단축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바젤협약의 경우도 5월부터 발효되므로 가입에 필요한 국내입법조치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Agenda 21의 제2부(section II)는 자원의 보존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대부분 국내적 조치로 달성가능한 분야이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은 노사문제, 환경오염규제의 순으로 고충을 털어놓고 있지만 환경에 적합한 생산방식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향후 10여년후에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환경오염방지 투자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폐기물회수·수거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금융·세제지원을 통해 폐기물재생산업도 육성해 나가야 한다.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환경규제를 신시장개척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환경기술개발투자의 확대와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여야 한다. 이미 G7 프로젝트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청정기술, 지구환경보전기술, 오염방지기술을 적극개발하고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등을 통해 환경기술의 종합과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다.

앞으로 환경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규제기준 차액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환경규제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시제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것이다.